

철강구조물공사업

■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등

■ 등록기준

2025.10.01 개정 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기계, 용접, 금속재료,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일반기계, 용접, 금속재료,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산업기사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제도
기능사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 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밀링, 연삭,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속도장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항

2026.07.27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철강구조물공사업	958,438원	법인 - 1.5억원 개인 - 3억원	법인 - 42좌 (40,254,396 원) 개인 - 84좌 (80,508,792 원)	법인 - 53좌 (50,797,214 원) 개인 - 105좌 (100,635,990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